

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이천시 민원창구 즉결민원 위임 전결 규정 등 2개 규정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정

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이천시 민원창구 즉결민원 위임 전결 규정 등 2개 규정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정

소관부서 : 감사법무담당관

제정 2024· 8·5 훈령 제330호

제1조(「이천시 민원창구 즉결민원 위임 전결 규정」의 개정) 이천시 민원창구 즉결민원 위임 전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1 문화분야 단위사무명란 중 “문화재 매매업 폐업신고”를 “문화유산 매매업 폐업신고”로, “문화재매매장부 검인”을 “문화유산매매장부 검인”으로 한다.

제2조(「이천시읍·면·동사무전결사항 규정」의 개정) 이천시읍·면·동사무전결사항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의 제12호의 단위사무명란 중 “문화재”를 “국가유산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